

재무감사

감사 보고서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2017. 4.

감사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4
1.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5
2.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주의)	9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국가재정법」 제60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등을 점검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등을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017. 3. 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10일간 감사인원 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감사종료 전인 2017. 3. 17.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7. 4. 1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조직 및 인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인·허가, 금융감독원의 업무 감독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표 1]과 같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금융위원회 조직 현황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위원 7명(상임 2명, 비상임 1명, 당연직 4명²⁾) ·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설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 자본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관련 심의·의결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4명(상임 1명, 비상임 3명)
사무처	· 사무처장,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20과

그리고 [표 2]와 같이 본부 215명, 금융정보분석원 51명 등 총 현원은 266명이다.

[표 2] 금융위원회 인력 현황(파견·휴직 등 별도정원제외)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특정직(경찰)		연구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58	266	2	2	3	3	243	251	8	8	2	2
본 부	198	215	2	2	3	3	192	209	-	-	1	1
금융정보분석원	60	51	-	-	-	-	51	42	8	8	1	1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2) 당연직: 기획재정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한국은행부총재

2. 세입 및 세출 예산

금융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255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7개 기금³⁾ 29조 9,855억 원 등 계 30조 2,110억 원이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조 142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7개 기금 29조 9,856억 원 등 계 31조 9,998억 원이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일 반 회 계	20,142
인 건 비	226
기 본 경 비	74
주 요 사 업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펀드) 800 ▪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해운보증기구 설립) 2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495 ▪ 금융정보분석원(FIU)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51 	1,842
회계기금 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18,000

3. 성과관리체계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는 [표 4]와 같이 프로그램목표 10개와 단위사업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임무	·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비전	· 미래 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전략목표 등	· 전략목표 4개, 프로그램 목표 10개, 단위사업 20개(일반재정 14개, 정보화 6개)

3)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7개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금융위원회

조 치 기 관 금융위원회

내 용

1. 업무 개요

금융위원회는 행정 및 국가(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 중 승소로 확정된 사건이나 취하된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등 소송비용의 회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2013. 1. 17. 서울고등검찰청은 금융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의 승소로 확정되었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 ~ 3. 17.) 중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승소 확정된 사건 및 소송 취하된 사건의 소송비용 회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2015. 5. 18.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원고: 주식회사 ◆◆)의 경우 소송비용 33,000,000원을 수임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2017. 3. 17. 현재까지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별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와 같이 총 14건에 대하여 계 137,170,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위 승소확정된 14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승소로 확정판결받거나 소송취하된 사건에 대하여 장기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별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미신청 명세”에 기재된 국가 승소 확정사건 계 14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등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

(단위: 원)

연번	소송 구분	사건명	피고	원고	확정일자	소송 결과	소송비용
1	행정 소송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 확인	금융위원회	◇◇ 외 4명	2012. 6. 14.	승소	2,750,000
2	행정 소송	집행정지	금융위원회	△△	2013. 6. 26.	승소	5,500,000
3	행정 소송	"	금융위원회	◎◎	2013. 7. 3.	승소	1,650,000
4	행정 소송	"	금융위원회	▲▲	2013. 7. 31.	승소	1,650,000
5	행정 소송	부실금융기관결정등 취소	금융위원회	▲▲	2013. 9. 13.	승소	3,300,000
6	행정 소송	"	금융위원회	◎◎	2013. 11. 20.	승소	3,300,000
7	행정 소송	해임요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위원장	A	2015. 2. 4.	승소	4,400,000
8	행정 소송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금융위원회	△△	2015. 3. 12.	승소	27,500,000
9	행정 소송	"	금융위원회	◆◆	2015. 5. 18.	승소	33,000,000
10	행정 소송	"	금융위원회	▽▽	2015. 10. 15.	승소	9,020,000
11	행정 소송	업무정지명령취소	금융위원회	▼▼	2016. 1. 19.	승소	11,000,000
12	행정 소송	자회사등 편입 승인 취소	금융위원회	●● 노동조합 외 3명	2016. 6. 3.	승소	22,000,000
13	행정 소송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금융위원회	∈∈	2016. 6. 22.	승소	6,600,000
14	행정 소송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증권선물위원회	B 외 1명	2016. 12. 8.	승소	5,500,000
합계							137,170,00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소 관 기 관 금융위원회

조 치 기 관 금융위원회

내 용

금융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2015년 6월에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를, 2017년 2월에 2016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표]와 같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전략목표, 10개 프로그램목표, 20개 단위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1개와 단위사업 성과지표 39개 등 계 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체계도

임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미래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목표	· 전략목표 I.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I-1. 신기보를 활용하여 산업금융을 원활히 지원한다 등 3개
	· 전략목표 II. 서민·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프로그램목표 II-1. 주신보를 활용하여 주택금융을 원활히 지원한다 등 4개
	·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목표 III-1.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등 2개
	· 전략목표 IV. 튼튼한 금융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 프로그램목표 IV-1. 금융행정을 효율화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11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 지표 중 6개의 목표치를, 39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중 32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 ~ 3. 17.) 중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분야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15년 4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을 설정할 때에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되 사업 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치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했다.

가. 프로그램목표 Ⅲ-1 성과지표 목표치 과소 설정

금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프로그램목표 Ⅲ-1]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금융산업글로벌화)’의 성과지표인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활성화’의 목표치를 22건으로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Ⅲ.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과지표) ②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활성화(건)

[측정방법] 외국 금융사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건수 합산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②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활성화(건)	목표	18	18	18	18	22
	실적	21	34	21	29	28
	달성률(%)	117	189	117	161	127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위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를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으로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근거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위 성과지표의 실적이 매년 목표치를 최소 117%에서 최대 189%까지 초과 달성하였는데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치를 18건으로 동일하게 설정하다가 2015년 6월에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2015회계연도 성과실적이 산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실적치 평균인 25건과 기존의 목표치 18건의 평균값인 22건으로 201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2015년 12월에 2015년도의 실적치가 확정되었으므로 2016년 1

월에 최근 3년(2013년부터 2015년까지)간 실적치 평균 28건을 목표치에 반영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나. 단위사업[Ⅲ-1-일반재정(1)] 성과지표 목표치 과소 설정

금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단위사업[Ⅲ-1-일반재정(1)] ‘금융 관련 국제협력’의 성과지표인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을 90점으로 설정하였다.

(전략목표) Ⅲ.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단위사업) Ⅲ-1-일반재정(1) 금융 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③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점)

[측정방법] IR 개최(30%), 해외 금융당국 초청세미나(20%), 뉴스레터발송(20%), 외국계금융사 간담회(30%)

$$\text{종합평가} = \text{a} + \text{b} + \text{c} + \text{d}$$

① 해외 IR 개최건수(가중치30%) : 4회 이상(30점), 2회 이상(15점), 0회(0점)

② 해외 금융당국 초청세미나(가중치20%) : 1건 이상(20점), 0건(0점)

③ 뉴스레터발송(가중치20%) : 12회(20점), 8회 이상(13점), 4회 이상(6점), 4회 미만(0점)

④ 외국계 금융사 간담회(가중치30%) : 3건 이상(30점), 2건 이상(20점), 1건 이상(10점), 0건(0점)

성과지표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③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점)	0.2	목표	90	90	90	90
		실적	100	100	100	100
		달성률(%)	111	111	111	111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목표치 측정 방법만 제시하였을 뿐 목표치 설정근거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위 성과지표의 실적이 목표치를 매년 초과 달성하였는데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매년 목표치를 90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한다는 성과관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2. 성과실적 보고 분야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변경 부적정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지표의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보고서의 실적은 성과계획서에 기재된 성과지표 측정방법에 의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I-3-일반재정(3)] ‘산업은행출자’의 성과지표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률’을 설정하고, 2016년 6월 말 현재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미소진분 10조 원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증액분 3조 원을 합산한 13조 원 대비 2016년 하반기(7월~12월) 투자비 규모의 비율로 실적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전략목표) I.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I-3. 국책은행(산은, 기은 및 수은)을 활용하여 산업금융을 지원한다

(단위사업) I-3-일반재정(3) 산업은행 출자

(성과지표) 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률(%)

[측정방법] 2016년도 하반기 총투자비 규모 ÷ 13조 원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에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실적치인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률’을 산정하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측정방법을 ‘2016년 하반기 기준 집행률’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누적 기준 집행률’로 변경하여 성과계획서상 측정방법에 의한 실적치인 59.4%

보다 24.2%p가 높은 83.6%로 실적을 산정하였다.

<성과계획서상 측정방법>: 13.3조 원 대비 2016년 하반기 투자비 7.9조 원의 비율인 **59.4%**

<성과보고서상 측정방법>: 2016년까지 누적 운용규모인 33조 원(추경 3조 원 포함) 대비 총투자비인 27.6조 원
(2016년 하반기투자비 7.9조 원)의 비율인 **83.6%**

그 결과, 2016회계연도 단위사업[I -3-일반재정(3)] ‘산업은행출자’의 성과 정보를 제대로 측정·제공하지 못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수용하면서,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목표치 설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한편 합리적인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실적 측정방법과 다르게 실적을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과소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지표의 실적 측정방법과 다르게 실적을 측정·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